

LOTTE 롯데알미늄	내부심의위원회 운영규정	문서번호: LAS-A0-06-10 제정일자: 2017. 04. 03 개정번호: 0
		페이지 1 / 3

1. 목적

이 규정은 롯데알미늄(주)(이하 "회사"라 한다)의 내부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는 일정규모 이상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공정성 및 적법성 여부 등을 스스로 사전에 심의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. 적용범위

본 규정은 본 규정 이외의 다른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.

3. 위원회의 구성

위원회는 하도급관련업무 담당 임원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임직원으로 구성하되, 필요시 사외이사 등 외부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.

위원장	1)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운영에 대한 방침을 설정한다. 2) 위원회를 소집하고 주관하며 의장이 된다. 3) 의결이 가부동수 일 때 결정권을 가진다
위원	1) 위원회에서 부의된 안건을 심의한다. 2) 위원회에 안건을 제안 또는 설명할 수 있다.
간사	1) 위원회 사무국의 업무를 수행한다. 2)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. 3) 회의록의 작성 및 관계서류 보관과 처리사항에 대한 위원장 보고 업무를 담당한다.

4. 위원회의 운영

4.1 위원회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고, 현안 발생시 수시로 개최한다.

다만, 안건이 없는 경우는 서면 결의로 "안건 없음"이라고 기록 관리한다.

4.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안에 대하여 심의한다.

4.2.1 협력사 등록, 취소 기준 및 절차의 적절성 여부 사전 심의

4.2.2 협력사 미선정 또는 등록취소에 대한 이의 신청건을 심의

4.2.3 하도급법 등 불공정거래 신고센터에 접수된 관련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및 임직원에 대한 인사위원회 회부 여부

4.2.4 개별 하도급거래계약(예상)금액이 일정비율(직전 사업년도의 하도급거래금액이 1,000 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0%, 1,000 억원 이상 5,000 억원 미만인 경우에는

LOTTE 롯데알미늄	내부심의위원회 운영규정	문서번호: LAS-A0-06-10 제정일자: 2017. 04. 03 개정번호: 0	
		페이지	2 / 3

5%, 5,000 억원 이상 1조원 미만인 경우에는 2%, 1조원 이상인 경우에는 1%이상인 거래) 이상인 거래에 대하여 계약체결 및 가격결정 과정의 공정성, 관련 법규에 대한 적법성 여부 등을 사전 심의하여야 하며, 적법성 여부는 다음의 사항을 중심으로 심의하여야 한다.

- 1) 서면계약서 교부의무 준수여부
- 2) 내국신용장 개설의무 준수여부
- 3)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무 준수 여부
- 4)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위반여부
- 5) 물품 등의 구매 강제금지 위반 여부
- 6)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위반여부

4.2.5 기타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

4.2.6 위원회는 불공정거래신고센터에 접수된 건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익명성을 보장하여야 한다.

5. 의결

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6. 위임

위원장은 본 규정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세부사항을 별도로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7. 서류보존

심의결과 및 조치사항 등과 관련한 문서는 심의 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관한다.

8. 시행일

이 규정은 2017년 4월 3일부터 제정 시행한다.(0)

이 규정은 2017년 7월 1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(1)

LOTTE 롯데알미늄	내부심의위원회 운영규정	문서번호: LAS-A0-06-10 제정일자: 2017. 04. 03 개정번호: 0
		페이지 3 / 3

[별첨 1] 회의록

회의록

결 재	간 사	위원장

회의구분	제 회	회의일시			
장 소		참석인원	명중	명 참석	
안 건					
심의내용 (검토내용)					
결의내용					
참 석 위 원					
부서 팀	성 명	날 인	부서	성 명	날 인

본 회의록의 내용을 인정 및 합의함.